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5523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552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16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주만, 신태영

변론종결 2022. 11. 1.

판결선고 2022. 11.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1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5면 2행의 ‘경우에는’ 이하를 ‘피고가 C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로 고침
- 5면 7행의 ‘현장POP에 관한 발주 및 제작, 공급 등 업무 일체’를 ‘현장POP에 관한 제작, 공급 등 업무 일체’로 고침
- 5면 9행의 ‘이에 따라’부터 제11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 7월 이후 현장POP를 직접 제작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에게 현장POP를 공급하면서 매월 원고로부터 현장POP 대금을 지급받았다.’로 고침
- 6면 3행의 ‘2017가합11046’을 ‘2017가합111046’으로 고침
- 6면 17행의 ‘을 2 내지 6호증’을 ‘을 2 내지 6, 8, 9호증’으로 고침
- 7면 12행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사실 및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34(본소), 2021나2017141(반소)}이 2022. 8. 18.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22. 9.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로 고침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현, 판사 김창현